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조례 제7조제1항”을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11. 사업장 임차계약서 1부

제6조제1항제1호 중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를 “융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를 “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의 용자받은”을 “기금을 용자받은”으로 한다.

제8조 중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한다.”를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의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하였거나 용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체 현황	기업체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사업장소재지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사업체 규모	자산 총액	백만원	총매출액	백만원
상시종업원			사업장 면적	건물 : m <sup>2</sup> 대지 : m <sup>2</sup>	
대상업종 및 품목	업종		품목	사회적 기업여부	
담보제공방법	부동산, 보증서, 신용보증추천, 기타				
대출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input type="checkbox"/> 5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 자금	자금용도	총소요액	용자신청액	중구 기존대출 잔액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기술자금(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년 ~   년) 1부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u>조례 제7조제1항에서</u> ----- ----- ----- -----.	제3조(기금의 용자대상의 선정기준) <u>조례 제12조제1항에서</u>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 조치법 제2조에 따른</u> -----.	4.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
5.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용자신청 및 추천)	제4조(용자신청 및 추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공장등록증 사본 1부</u>	2.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u>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각 1부</u>	5. <삭    제>
6. <u>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 증명서 1부</u>	6.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신    설>	10. <u>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u>
11. <신    설>	11. <u>사업장 임차계약서</u>
제6조(용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용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u>용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u>	1. <u>용자한도액은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조업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의 용자받은 중소기업자는

-----  
-----.

제8조(용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자는

-----  
-----.

제8조(용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용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b>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b>					<b>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b>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기업체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설립년월일				
사업체규모		상시종업원	자산총액		팩스번호				
대상업종과 품목		업종	품목						
자격요건									
신청자금	기금구분	총소요액	용자신청액	비율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 구 청 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5.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2. 공장등록사본		6. 생산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완료증명서							
3. 사업자등록사본		7. 협동조합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한다)							
4. 공업배출시설설치허가증사본(허가대상업체에 한한다)									
신청금	자금용도	총소요액	용자신청액	중구 기존대출 잔액					
	운전자금(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자금( ) 기출자금( )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년 ~    년) 1부							
5.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									

